【제목】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인 사업자(A)가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출연금 일부를 참여기업(B)에 지급하여 A와 B가 공동으로 기술개발하고 그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A에게만 귀속시키는 경우, B가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o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한국△△△△(이하 '평가원'이라 함)과 '☆☆☆협력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신청인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평가원을 전담기관으로, (주)×××× 등 3개 업체를 참여기업으로, □□대학교를 위탁기관으로 하여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함)를 체결함.

o 1차년도 기술개발사업은 평가원의 정부출연금 734,000천원, 신청인의 부담금 125,000천원, 참여기업의 부담금 164,800천원, 위탁기관의 부담금 4,800천원으로 시행하고

- 정부출연금은 주관기관의 계좌에 입금된 후 1주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귀속금액별로 이체되며
- 참여기업은 원사개발과 원사염색 등을 거쳐 시제품 형태로 주관기관인 신청인에게 인도하여
- 신청인이 완성품을 개발하고 위탁기관의 품질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으로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함.

o 참여기업의 권한과 책임은 ① 과제에의 공동 참여 및 협력 ② 참여기업이 부담하기로 한 기술개발사업비 부담 ③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④ 그 밖에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참여기업의 권한 또는 책임으로 정한 사항으로

- 시제품을 제조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거나 시제품 완성 전 단계에서 참여기업 간에 재화를 이동할 때 참여기업간에 사업비를 수수할 수 없음(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2조 제7항).

o 협약서에 따르면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등의 무·유형적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주관기관의 소유이나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간의 계약에 따라 공동소유하거나 참여기업이 소유할 수 있음(신청일 현재 별도의 계약이 없음).

(질의내용)

o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평가원과 '섬유스트림간 기술개발사업'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주관기관에 해당하는 신청인과 참여기업이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참여기업으로부터 시제품을 인수받는 경우

- 참여기업 시제품을 기술개발용역의 부수재화로 보고 참여기업은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위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한국△△△△과 '☆☆☆ 협력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출연금 일부를 참여기업에 지급한 다음 당해 기술개발사업을 참여기업과 함께 수행하면서 그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귀속시키고 참여기업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Copyright©1999-2013 삼일인포마인(주) All rights reserved.

SAMILi.com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중소기업청과 국책연구과제를 당사와 공동연구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과제수행 계약을 함.

o 정부출연금은 당사가 일괄 수령하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하는 형태이고 연구과제의 결과물은 각각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과제가 진행하는 도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질의요지)

o 당사가 지급받은 연구비에 대하여 대학교에 연구비를 지급할 때 당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혹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와 관계없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며,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89, 2008.2.5.)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3팀-289, 2008.2.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Copyright©1999-2013 삼일인포마인(주) All rights reserved.